법적책임추궁의 일반조건

리 경 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법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법적책임을 정확히 설정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나 법적으로 책임추궁을 받아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중보판 121폐지)

법적책임은 일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이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것으로 하여 져야 하는 불리한 후과이며 국가가 지배계급의 요구에 맞지 않는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주는 부정적평가이다.

법적책임의 추궁조건은 행위자가 어떤 경우에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가, 어떤 조 건하에서 법적책임을 추궁할수 있는가 하 는것이다.

법제정기관이 법적책임을 정확히 설정하고 재판기관을 비롯한 권한있는 국가기관들이 법적책임을 정확히 추궁하자면 법적책임추궁의 일반조건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인식하는것이 필요하다.

어떤 행위가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으며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자기 행위의 성격과 후과를 분별하고 통제할수 있는 능력과 허물(잘못)이 있으며 그런 행위와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조성된 손해의 원인으로 될 때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응당 불리한 후과 즉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책임추궁의 일반조건에 대하여 법위반행위, 손해사실, 당사자, 허물, 인과관

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로, 법적책임은 일반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추궁한다.

법위반행위는 구체적으로 법적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권리와 의무의 형식으로 규제하며 법률관계당사자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직권은 제외)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책임이 초래되는것은 아니다. 결국 법적책임이일반적으로 법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법적의무의 불리행, 법적의무위반을 전제로 한다는것이다.

법위반행위, 법적의무위반행위가 법적책 임을 초래하게 되는것은 그것이 지배계급 의 의사에 배치되는 행위이기때문이다. 정 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은 자기 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질서를 세우기 위 하여 사람들에게 법적권리와 의무의 형식 으로 행동준칙을 제시한다. 법을 지키면 지 배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질서가 서 게 되지만 법을 위반하면 지배계급의 의 사와 요구에 맞는 질서가 수립될수 없으 며 지배계급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때문에 지배계급은 국가를 통하여 법을 제정할 때 법적권리 와 의무의 형식으로 행동준칙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지게 되 는 법적책임에 대하여서도 규정한다.

법위반행위는 법적책임을 지는 당사자자신의 법위반행위일수도 있고 스스로 법적책임을 지지 못하는 미성인이나 정신병자의 법위반행위일수도 있다. 누구의 법위반행위든 관계없이 법위반행위가 있어야 법적책임도 있다. 법위반행위, 법적의무위반행위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법적책임도 없다.

례외적으로 민사법부문에서 법위반행위

가 없이도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 다. 실례로 일부 나라들의 민법에서 규정 하고있는 공평책임의 경우를 들수 있다. 어 느 한 나라의 민법에서는 《긴급피난때문 에 조성된 손해에 대해서는 위험한 정황 을 발생시킨 사람이 민사책임을 진다. 만 약 위험이 자연적원인으로 일어난 경우 긴 급피난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적당 한 민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만 약 위험이 자연적원인으로 일어나고 긴급 피난자가 리익을 얻은 경우에는 긴급피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 하여 긴급피난자가 적당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 여기서 긴급피난행위는 법률상 명 백히 적법행위이지만 법은 그가 일정한 법 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이런 례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법위반행위가 법적책임을 지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때문에 법제정기관은 법적책임을 설정할 때 법적의무와 그 위반 그리고 법적책임사이의 련관관계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법적용기관은 어떤 당사자의 행위가 법위반행위라는것을 립증한데 기초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법적책임은 많은 경우 손해의 사 실이 있는 경우에 추궁한다.

손해는 경우에 따라 인신적인것일수도 있고 재산적인것일수도 있으며 정신적인 것일수도 있다. 그리고 손해는 이미 발생 한것이거나 필연적으로 발생할것으로 확 정된 손해를 의미하며 허구적이거나 또는 발생할수도 있는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한 손해사실을 법적책임의 구성요 건으로 하는것은 만약 일정한 행위가 어 떤 손해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많은 경 우에 이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 는 의의가 없기때문이다. 법적책임을 추 궁하는 목적은 법이 보호하는 리익 즉 정 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집단의 리익, 개별적사람의 리익이 손해 또는 침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제거하고 지배계급의 리익을 보호하며 앞으로의 침해발생가능성을 될수록 감소시키는데 있다.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목적으로부터 볼 때 법을 위반하였지만 아무런 손해도 일으키지 않은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별로 제기되지 않는다. 때문에 법적책임은 많은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일반조건으로 하게 된다.

손해사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위반행위 그자체만으로 책임을 추궁하 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에서 어떤 특별히 엄중한 범죄(반국 가범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큰 손해가 조 성되여야만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는것 이 아니다. 이런 행위범의 경우에는 커다 란 손해(테로, 정변, 국가전복 등과 같은 손 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도 형법규정 을 위반한것만으로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인 정하고 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런 범죄행위는 행위자체가 국가나 사회 에 대하여 위험이나 손해를 조성하는것이 므로 당연히 형사적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리해할수 있다.

행정법에서는 손해사실이 없어도 법위 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로, 법적책임은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궁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능력은 자기 행위의 성격을 리해하며 그것을 분별통제할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자기 행위 가 옳고 선한 행위인가 아니면 그르고 악 한 행위인가, 그런 행위로 하여 사회와 다 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가 초래되게 되는 가 하는것을 리해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통 제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 행위의 성격을 리해하고 그것을 분 별통제할수 있는 사람에게만 법적책임을 지 우는것은 법위반행위가 사람들의 의식적 인 행위이며 자기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의 위험성과 성격을 분별하고 통제할수 있 는 사람들의 행위이기때문이다.

철없는 어린이나 아무것도 분별못하는 정신병자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고 할 때 그 행위는 정상적이며 자유로운 의식의 지배를 받는 행위, 의식적인 행위 가 아니라 순수 육체적인 움직임에 불과 하며 그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한 다면 아무런 교양적효과도 나타낼수 없다. 이로부터 자기의 행위의 성격을 리해하고 그것을 분별통제할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만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이 옳다.

행위능력이나 책임능력은 일반적으로 나이규정을 통하여 인정된다.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나이는 부문법마다 각이하지만 어쨌든 법이 규정한 나이가 되여야 자기 행위의 성격을 리해하고 그것을 분별통제할수 있다고 본다. 례외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나이에 이른 사람이지만 정신병으로 자기 행위를 분별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법의학감정에 기초하여 책임능력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결국 책임능력이 있다는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책임나이에 도달하고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있다는것이다.

공화국민법에 의하면 우리 공화국에서 6 살미만의 행위무능력자는 민사책임을 질 수 없으며 6살이상 16살미만의(의무교육을 받는 학령시기의) 부분적행위무능력자 는 허용된 범위내에서 민사책임을 진다.(민법 제21조) 로동보수를 받는 16살난 공민인 경우에는 자기가 마련한 로동보수의 범위안에서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20조 2항) 17살이상의 사람은 자기의 민사상위법행위나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완전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화국형법에서는 자기 행위의 성격을 리해하며 분별통제할수 있는 나이를 14살로 규정하고있다.(형법 제11조) 14살이상 된자라 하더라도 정신병자와 같이 자기 행위의 성격을 분별통제하지 못하는자에게는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없다.(형법 제12조)

우리 공화국에서는 행정처벌을 16살이 상 이른자에 대하여서만 할수 있다.(행정 처벌법 제8조) 이것은 행정책임능력을 인 정하는 나이가 16살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법적책임의 당사자에 대한 리해에서 주 의할것은 법적책임당사자와 법위반자가 반 드시 일치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법위반자는 법적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는 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다 법위반자로 된다. 때문에 법위반자는 나이와 정신상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살짜리 어린이가 고의적으로 집에불질렀다고 할 때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것때문에 법적책임을 지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적책임을 지자면 반드시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법적책임은 보통 법위반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반 드시 법적책임을 지는것은 아니다. 행위무 능력자와 부분적행위(무)능력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서는 흔히 그들의 부모나 후 견인이 법적책임을 진다.

넷째로, 법적책임은 일반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관적허물(잘못)이 있는 경우에 추궁한다.

이것은 법적책임은 일반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잘못한것이 있는 경우에 추궁되며 아무런 잘못(허물)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불가항력이나 뜻밖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법적책임을 추궁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관적허물(잘못)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설정하고 추

궁하는것은 법위반행위가 자기의 행위의 성 격과 후과에 대하여 분별통제할수 있는 사 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선택한 행 위이기때문이다. 행위능력 또는 책임능력 있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것은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되며 따라서 보호되고 장려되는것이지만 법위반행위는 지배계급 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며 따라서 추궁 되고 비난받는것이라는것을 분별할수 있 으며 그에 기초하여 법을 지킬것인가 아 니면 위반할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한다. 지 배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맞지 않는 행위 라는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때 국 가는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후과를 지 워야 한다. 다시말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하 여야 한다. 그래야 그가 다시는 그런 그릇 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그런 잘못을 범하 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서 지배계급의 의 사와 요구에 맞는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 할수 있다.

형법에서는 범죄자의 주관적허물에 대하여 매우 중시하며 범죄자의 주관적허물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한다. 그리고 동질의 범죄에서 고의적범죄는 과실적범죄에 비하여 형사책임이 크다.

민사법에서도 일반적으로 행위자에게 주 관적허물이 있어야 민사책임을 지울수 있다. 그러나 민사책임을 추궁하는데서 행위 자의 주관적허물이 가지는 의의는 형법에 서처럼 그렇게 크지 않으며 민법에서의 허물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민법에는 무과실(무허물)책임이라는것도 있기때문에 어떤 민사책임이든 다 행위자에게 허물이 있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은 아니다.

행정법에서도 주관적허물이 있어야 행정법적으로 위법행위로 되며 행정책임을 추

궁할수 있다. 다만 형법이나 민법과 다른 것은 행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위 법행위를 하였다면 그에게 주관적허물이 있 다고 보고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주 관적요소에 대하여 더 따져볼 필요가 없 다고 보는것이다. 이것을 《허물추정》이 라고 한다. 이에 따라 행정법에서는 위법 행위를 한자에게 주관적허물이 있는가 없 는가에 대하여 별로 따져보지 않는다.

다섯째로, 법위반행위와 손해사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법위반행위를 한 사람 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법적책임을 추궁하자면 위법행위와 손해사실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위법행위와 손해사실사이에 반드시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할것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의 법위반행위가 일정한 손해사실을 일으킨 원인으로되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할수 없다.

법위반행위와 손해사실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립증하는것은 법적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례로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과 동시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 사람의 상해가 치명적이라고 하는 경우 어느 사람이 그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는가를 확정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이 직접적관계가 정확히 밝혀져야 매개 침해자의 책임의 크기를 정확히 결정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법실천에는 이런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우리는 법적책임추궁의 일반조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법을 제정할 때 법적책임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법을 집행할 때 법위반자들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정확히 추궁하여야 할것이다.